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06(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10. 28

나. 제 안 자 : 이용범, 류수용 의원 (찬성자 9인)

다. 회부일자 : 2013. 10. 29

라. 상정일자 : 2013. 12. 06(**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보좌기능의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통하여 현안문제와 정책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제반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입법·정책업무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 지방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견제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이강호 위원>

○ 도입시 소요예산?

→ 연봉 1인당 3천만원, 계약직 나급 수준, 총 10억원 정도 예상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용범, 차준택, 최용덕, 류수용, 이강호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1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한민국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대표기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지방의회가 전문적인 정책보좌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행정이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양적, 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지원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회 보좌기능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다.

2013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